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대상
(19종)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보상
범위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

신규 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전화]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 · 흥국화재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손해보험 | 1588-0100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수협 | 1588-4119 · 신한 | 1544-3030 · MG새마을금고 | 1599-9010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1.8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숙박업소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 모텔, 호텔, 콘도 등 숙박업소 **의무가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 (모텔, 여관, 여인숙 등)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호텔, 콘도, 호스텔 등)



가입시기

- 신규 숙박업소
: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1사고당 10억원 까지 보장

- 500㎡ 기준, 연간 보험료 75,900원
- 1,000㎡ 기준, 연간 보험료 151,900원
* 단,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숙박업소 투숙객 등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 까지 보장**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 태 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특수건물이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숙박업소는 가입 제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숙박업소 또는 특수 건물인 숙박업소

특수건물

- ①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관광숙박업소
- ②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일반숙박업소
- ③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공유시설에 위치한 숙박업소



자주 묻는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상한도*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유지 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

[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가입 문의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Heungkuk
Life Insurance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수협

1588-4119



MG 새마을금고

1599-9010



현대해상

1588-5656



KB 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The K 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신협

1544-3030



MG손해보험

1588-5959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1.8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1층에 있는 100㎡ 이상 시설 의무가입

-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 이상 시설 (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 1층 외에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 이상의 시설은
의무가입대상



가입시기

- 신규 음식점
: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연간 보험료 2만원으로 음식점 이용객 등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보장

- 1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원,
300㎡ 정도는 2만8천원 수준
* 단,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 까지 보장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8. 8.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가입의무 위반 기간	과 태 료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특수건물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은 가입 제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특수건물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소, 공연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일반숙박업소, 대규모점포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다중이용업소

- 2층 이상에 위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 이상인 시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공유시설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자주 묻는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상한도*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유지 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

[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가입 문의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Heungkuk
Life Insurance

1688-1688

SAMSUNG

삼성화재

1588-5114



수협

1588-4119



MG새마을금고

1599-9010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The K 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신협

1544-3030



MG손해보험

1588-5959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